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17. 10.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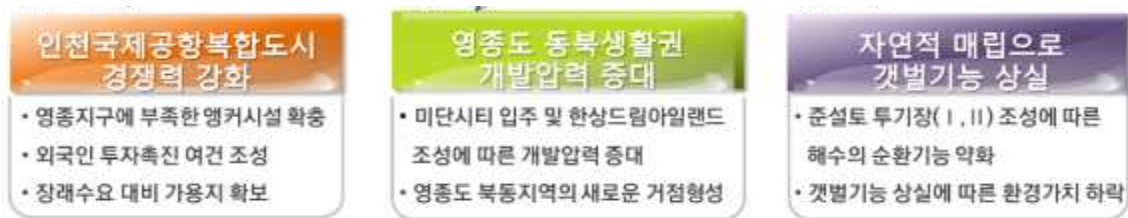
1. 계획의 개요	1
2. 평가항목 및 범위(대상지역) 등의 설정	8
3. 대안의 설정 및 평가	16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21
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22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나.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인천국제공항의 시설·기능 확장에 대비하여 영종지구의 경쟁력 제고 및 지구활성화 방안 마련
- 미단시티, 항만재개발사업(한상드림아일랜드) 및 영종하늘도시 등 영종도의 동북생활권 내 개발압력의 증대로 인한 거시적 도시관리방안 필요
- 영종도와 투기장 사이의 공유수면에 대한 자연적 매립 진행에 따라 도시계획적·장기적 관점에서 당해지역의 활용방안 필요



- 앵커시설 등 신규기능 도입 및 주변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단지 조성
- 미단시티, 한상드림아일랜드 및 영종하늘도시와의 기능보완 및 연계계획으로 체계적인 통합개발계획 수립
- 갯골 보전 및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등 친환경 단지조성으로 환경가치 제고
- 영종지구 특화발전을 위한 미래 장기계획 수립

다. 계획의 추진 경위

- 2002. 04. 04.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확정
(국민경제자문회의의견 정책조정회의)
- 2002. 07. 29.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정부시안)’ 발표
- 2003. 08. 11.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
- 송도지구 53,339천㎡, 청라지구 17,783천㎡, 영종지구 138,314천㎡
- 2012. 02. 09. : 영종2지구(계획미수립지) 공유수면매립 사전환경성·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 체결
- 2013. 07. 15. : 해양수산부 협의(1차)
- 영종2지구 및 주변 마스터플랜 필요성 공감하나, 구체적인 협의는 사업자 지정 후에 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함이 타당
- 2013. 10. 02. : 해양수산부 협의(2차)
-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추진 시 공유수면매립법 의제 가능
(단, 추진 시 중앙연안관리위원회 심의 이행 필요)
- 2016. 07. 13 :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그림 1 - 1]

계획지구 위치도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 본 사업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사항을 공개하여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자 함

<표 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구 분	관 련 근 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마. 계획의 내용

- 계 획 시 행 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계획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
- 면 적 : 3,934,564㎡ (1단계: 1,438,984㎡, 2단계: 2,495,580㎡)
- 사 업 비 : 1,149,6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31년

구 분		호안공사	매립공사	연약지반처리	부지조성공사
공사기간	1단계	2018 ~ 2020년	2020 ~ 2023년	2022 ~ 2024년	2023 ~ 2026년
	2단계	2020 ~ 2023년	2023 ~ 2029년	2026 ~ 2030년	2029 ~ 2031년

- 경제자유구역경계 설정
 - 지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면적에서 금회 878,520㎡를 추가 지정하고자 함
 - 영종2지구 계획부지 면적은 미단시티 구역계 변경 및 준설투기장Ⅱ에 편입 등으로 309,597㎡가 제척됨
 - 그 결과 총 568,923㎡가 증가하여 계획지구 총 면적을 3,934,564㎡로 설정함

<표 1 - 2> 구역 경계 설정

구분	설 정 사 유
1	준설토 투기장Ⅱ 경계
2	구역계 정형화
3	미단시티 경계
4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경계
5	도시계획도로 00-00호선 경계(포함)
6	영종하늘도시 경계
7	준설토 투기장Ⅰ 경계

바.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특화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및 기반시설용지(공원, 녹지, 하천, 수로, 조류대체식지, 학교, 도로 등)로 구분하여 용도별 배분 계획을 수립함

(1) 주택건설용지

- 본 단지를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를 위해 공동주택의 경우는 용적률 150~195% 내외, 단독주택지의 경우는 100~150% 내외를 기준으로 계획하였음
- 단독주택용지는 불력형으로 공급을 전제로 주변의 공원, 녹지 등과 연계하여 저층 저밀 고급주택지가 되도록 계획하고 보행동선 상에 학교 및 생활편의시설이 연계되도록 계획

(2) 상업시설용지

- 기존 불역을 통합하여 상업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고, 슈퍼블럭으로 계획하여 랜드마크적인 이미지 창출
- 이용자의 행태와 편의를 감안하여 상업시설지와 업무시설지가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
- 이용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 문화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과 상호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단지중심부에 집약 배치

(3) 특화시설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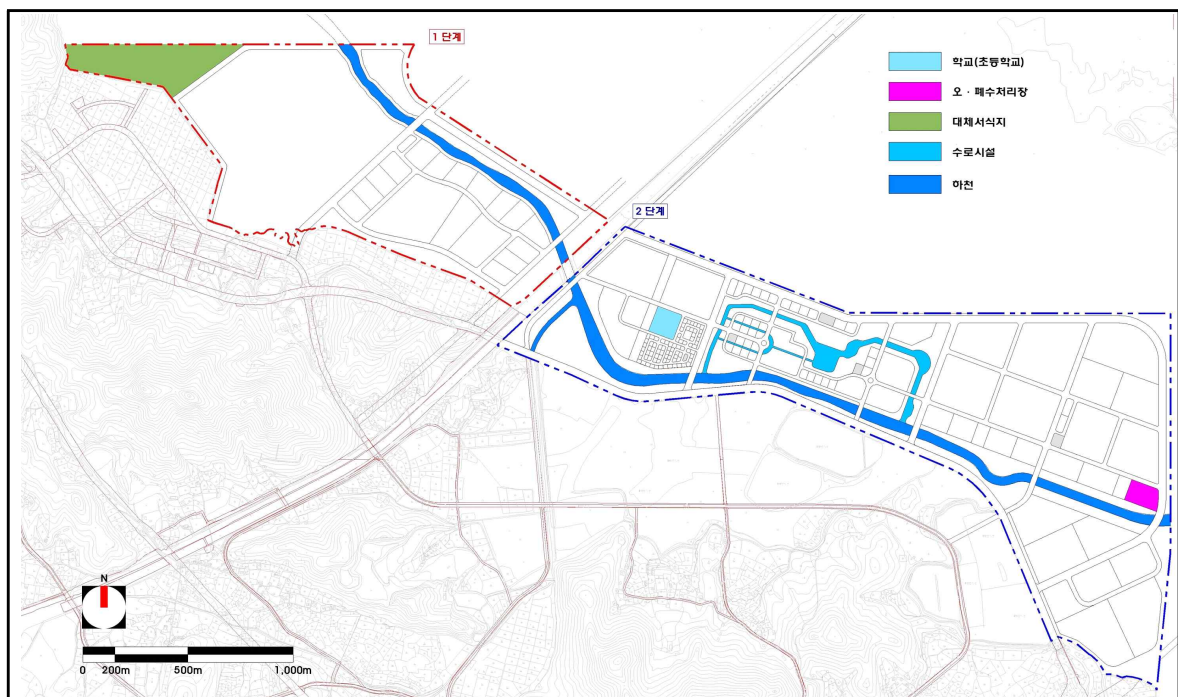
- 유통시설(아울렛), 호텔·컨벤션시설, 한류콘텐츠 제작소, 오토캠핑장, 스포츠 파크 등 본 단지에 도입되는 시설은 그 자체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요소(Attraction)이므로 수변시설 주변에 배치하고, 상업·유통·수변시설과 연계 배치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4) 산업시설용지

- 계획지구 동측부지에 산업·물류용지를 집적화 하여 연구개발업 7개소, 항공운송업 10개소 등을 주거단지와 분리하여 배치

(5) 수로 계획

- 해수유동 실험 결과, 매립에 따른 해수 영향은 미미하나, 기존 갯골을 이용한 하천형 수로 개발로 환경영향을 최소화
- 기존 갯골보전을 통한 친환경개발로 동강천 수계 바다 유출 기능을 유지하고, 워터프론트, 커널워크 등 특화 요소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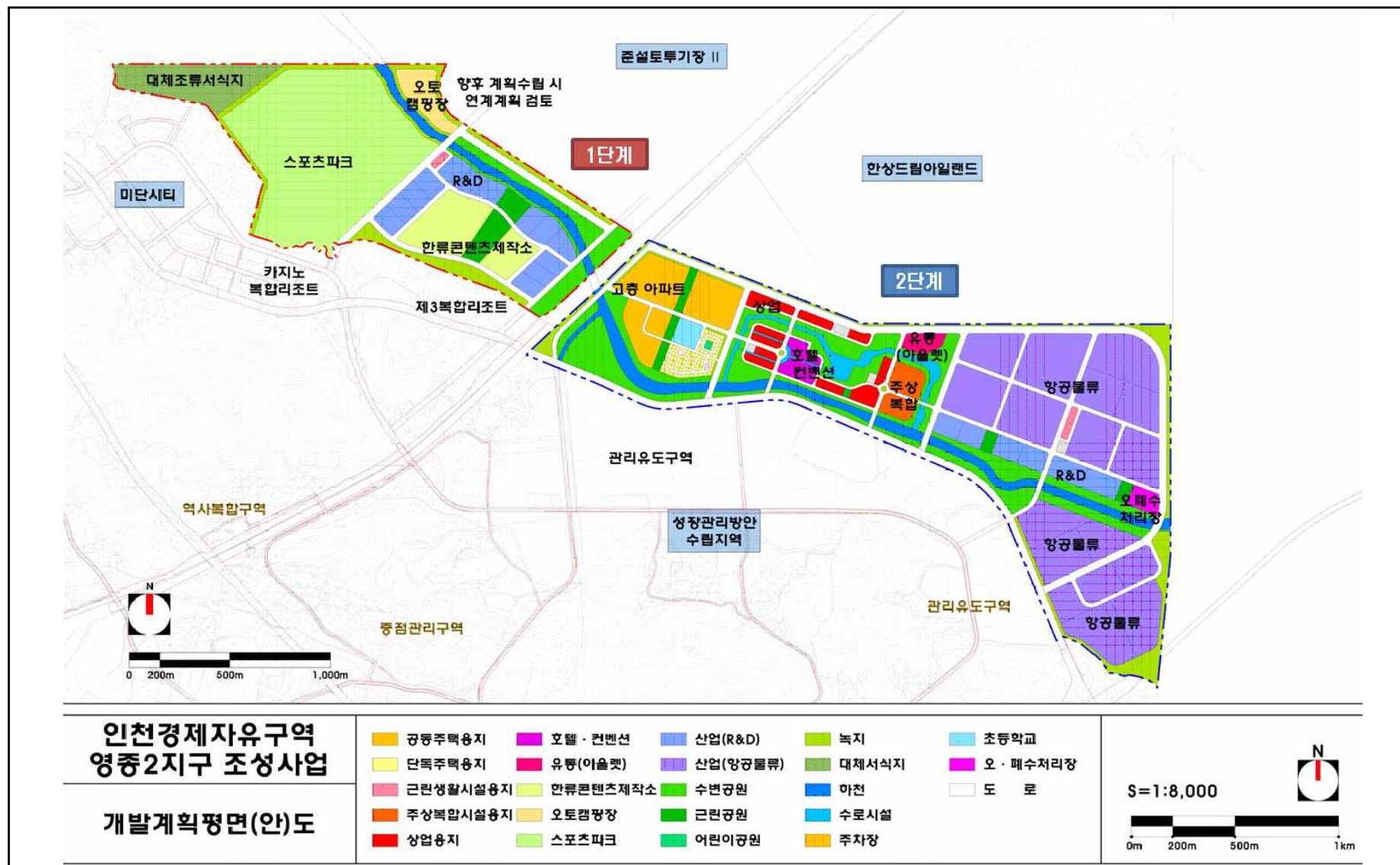
[그림 1 - 2]

수로시설 계획도

<표 1 - 3>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1단계	2단계	합계	
합계		1,438,984	2,495,580	3,934,564	100.0
주택건설용지	소계	3,218	185,516	188,733	4.8
	공동주택	-	152,441	152,441	3.9
	단독주택	-	27,464	27,464	0.7
	근린생활시설	3,218	5,610	8,828	0.2
상업시설용지	소계	-	105,001	105,001	2.7
	상업시설	-	66,773	66,773	1.7
	주상복합	-	38,228	38,228	1.0
특화시설용지	소계	724,383	41,767	766,150	19.5
	유통(아울렛)	-	16,408	16,408	0.4
	호텔·컨벤션	-	25,360	25,360	0.6
	한류콘텐츠제작소	118,828	-	118,828	3.0
	오토캠핑장	40,611	-	40,611	1.0
	스포츠파크	564,943	-	564,943	14.4
산업시설용지	소계	148,215	891,555	1,039,770	26.4
	R&D	148,215	85,464	233,679	5.9
	항공물류	-	806,091	806,091	20.5
공공시설용지 (도시기반시설)	소계	563,169	1,271,741	1,834,909	46.6
	수변공원	91,867	373,363	465,230	11.8
	근린공원	41,533	33,079	74,612	1.9
	어린이공원	-	1,350	1,350	0.0
	녹지	126,787	139,558	266,345	6.8
	하천	56,038	142,716	198,754	5.1
	수로	-	55,809	55,809	1.4
	대체서식지	119,530	-	119,530	3.0
	주차장	-	9,575	9,575	0.2
	초등학교	-	14,711	14,711	0.4
	오·폐수처리장	-	14,791	14,791	0.4
	도로	127,414	486,789	614,203	15.6



[그림 1 - 3]

토지이용계획도

2. 평가항목 및 범위(대상지역) 등의 설정

가. 환경영향요소 추출

-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영향요소의 추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업계획 및 지역특성을 숙지한 후, 이를 토대로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인자를 추출함

<표 2 - 1>

환경영향요소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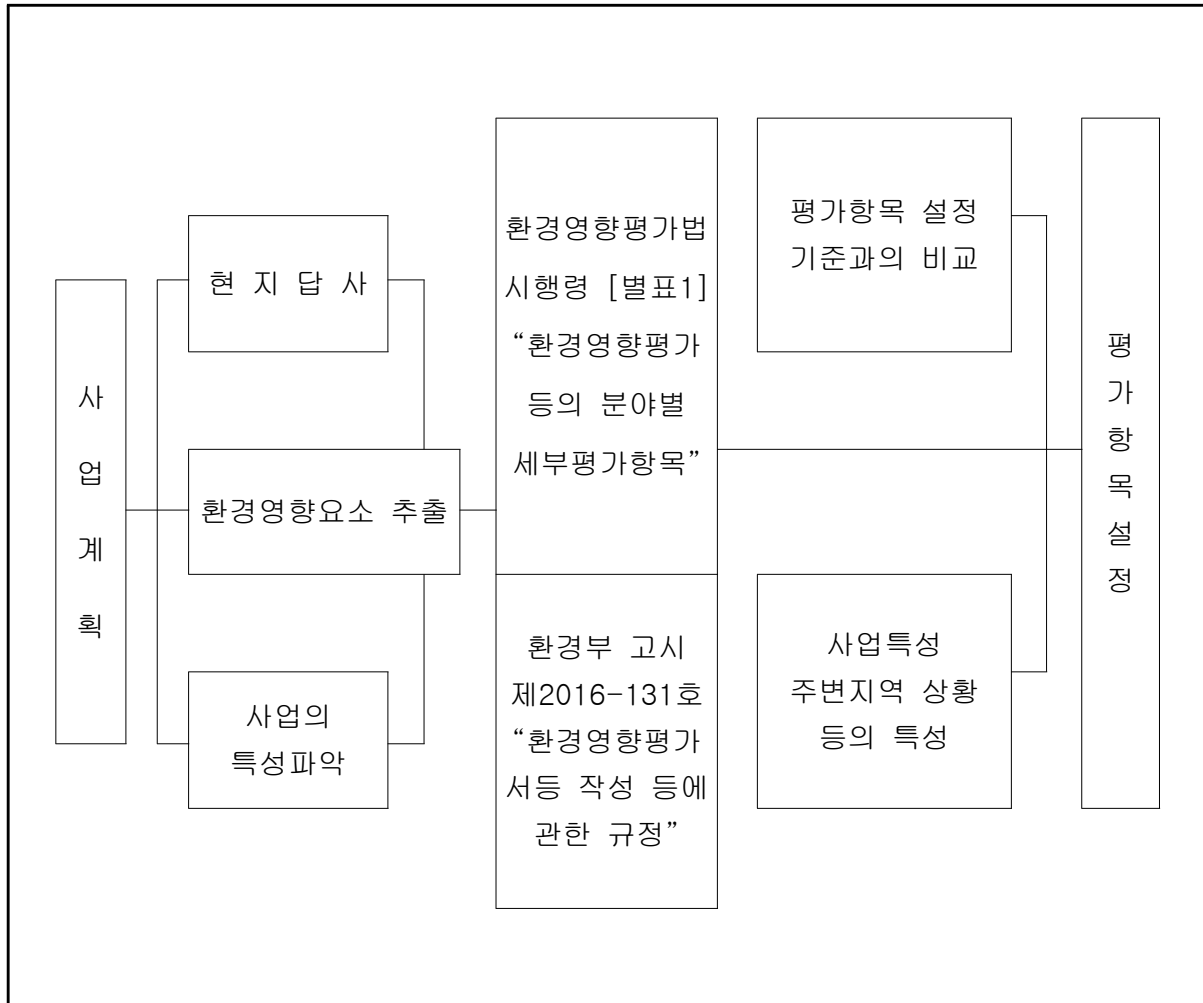
구 분		환 경 영 향 요 소
공사 시	자연형질의 변화	• 매립 및 준설작업에 의한 지형 및 형질 변화 • 배수시설 및 수로공사
	건설자재 및 준설토 운반	• 공사 장비 이동 • 건설자재 운송
	시설물 공사	• 토공기초 공사 • 건물 건축 • 배수관로 공사 • 공사 인부 및 장비 투입 • 조경 식재
운영 시	시설물 이용	• 산업시설, 지원시설 등의 운영 • 인구 유입 • 기타 도로시설물 운영 • 취사, 난방, 교통량 증가

나. 평가항목의 설정

- 본 계획으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입지적 범위를 고려한 후 주요 평가 항목별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주요 평가항목의 설정은 사업계획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및 ‘환경부고시 제2016-131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설정함

<표 2 - 2>

평가 항목 설정 절차



- 본 계획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중점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이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육상 및 해양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등 총 9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선정사유는 아래에 제시하였음

<표 2 - 3>

평가항목의 설정

구 분	평 가 항 목
중점평가항목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육상 및 해양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수환경의 보전(수질, 해양환경),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대기질), 소음·진동환경기준의 부합성(소음·진동),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친환경적 자원순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토지이용)
현황조사항목	기상

<표 2 - 4>

평가항목의 선정 사유

평 가 항 목			결정결과	선 정 사 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보전	육상 동·식물상	중점평가 항 목	• 동·식물상 현황조사 및 주변 녹지지역과의 연계 • 매립 전·후 조류서식지의 변화
		해양 동·식물상	중점평가 항 목	• 준설 및 매립공사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중점평가 항 목	• 준설 및 매립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 매립공사를 위한 재료원 확보계획 • 연약지반 발생
	수환경의 보전	수 질	중점평가 항 목	• 준설 및 매립공사로 인한 토사유입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유입 • 운영 시 이용인구에 의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원 유입
		해양환경	중점평가 항 목	• 준설 및 매립공사로 인한 해수유동, 오염물질 확산 등 해양환경의 변화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과 의 부합성	기 상	현황조사 항 목
대기질			중점평가 항 목	• 토사운반 및 장비가동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 시 연료사용 및 유발교통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소음·진동			중점평가 항 목	• 공사 시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영향 • 운영 시 유발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중점평가 항 목	• 공사 시 폐유, 폐자재의 발생 •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중점평가 항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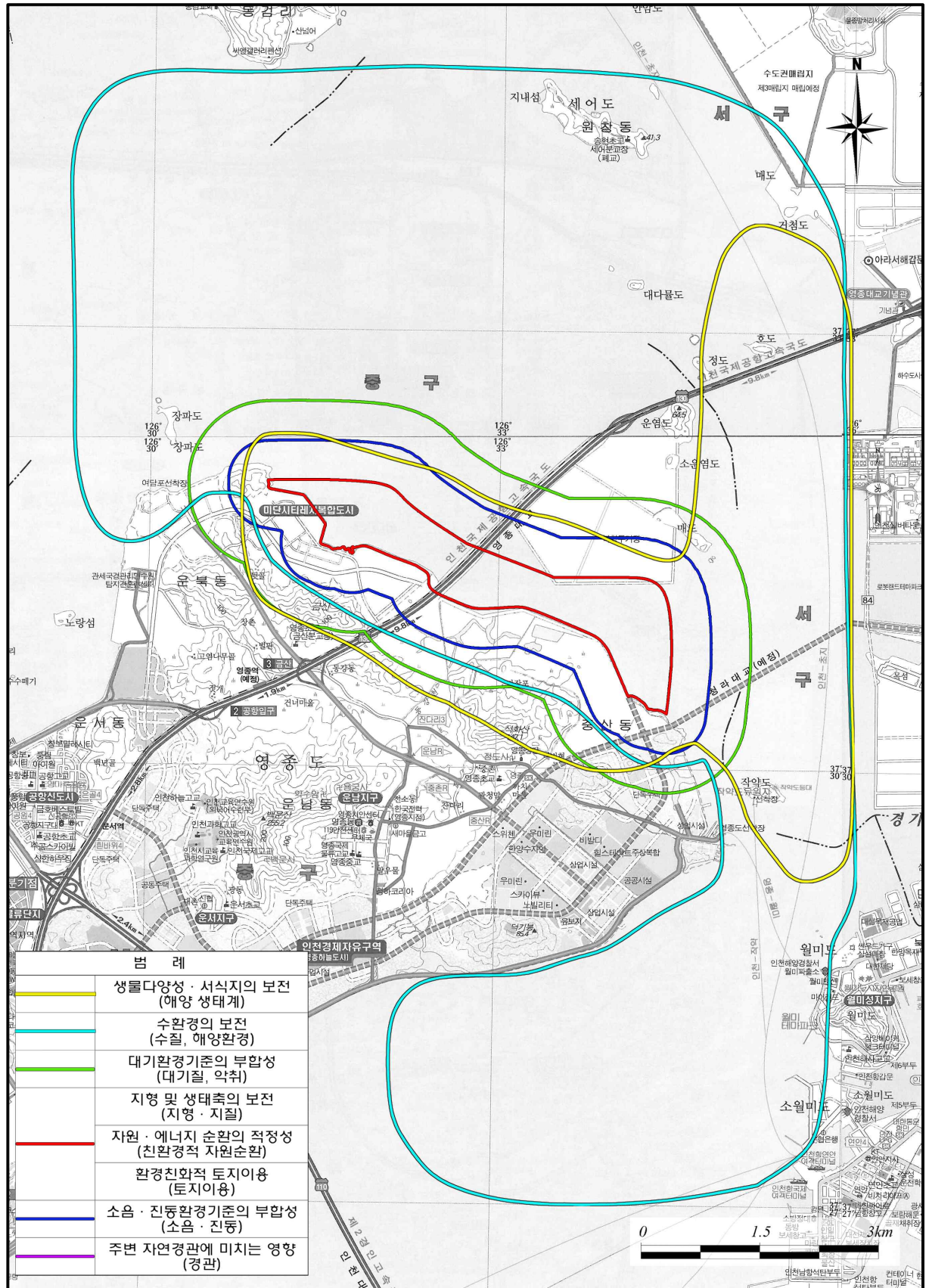
다.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목은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육상 및 해양 동·식물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수환경의 보전(수질, 해양환경),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대기질), 소음·진동환경기준의 부합성(소음·진동),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친환경적 자원순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토지이용),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임
- 주요 환경인자가 환경에 미칠 영향범위인 계획지구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 - 5>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사유	결정결과	
		시간적범위	공간적 범위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육상 및 해양 동·식물상)	•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육상 및 해양 동·식물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동물상의 서식지 훼손	공사 시 및 운영 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5km)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매립으로 인한 지형변화 • 연약지반 발생	공사 시 및 운영 시	계획지구
수환경의 보전 (수질, 해양환경)	• 공사 시 작업 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 공사 시 토사유출 발생 영향 지역 • 공사 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	공사 시 및 운영 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5km)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질)	• 공사 시 및 운영 시 대기질 변화 예상	공사 시 및 운영 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km)
소음·진동환경기준의 부합성 (소음·진동)	• 공사 시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영향예측 • 운영 시 유발교통량 따른 소음영향 예상	공사 시 및 운영 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500m)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폐유, 폐자재, 분뇨의 발생 •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	공사 시 및 운영 시	계획지구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변화	운영 시	계획지구



[그림 2 - 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라. 중점평가항목의 평가방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등 환경상에 미치는 영향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한 중점평가 사유 및 예측·분석방법, 평가기법, 관련자료 및 평가대상지역을 제시하였음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구 분	내 용	
	육상 동·식물상	해양 동·식물상
평 가 사 유	- 동·식물상 현황조사 및 주변 녹지지역과의 연계 - 매립 전·후 조류서식지의 변화 - 매립지 해충 발생 여부	준설 및 매립공사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
예 측·분 석 및 평 가 기 법	- 녹지 확보방안 검토 - 동·식물 서식공간으로서 녹지의 양적, 질적 변화분석	공사 시 해양 동·식물상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예측 및 분석
관 련 자 료	- 식생보전등급, 현존식생도 - 생태·자연도 - 현지조사 자료 - 문헌자료(보호수, 노거수, 법정보호종 등)	- 한국 연근해 유용생물도감 - 한국패류도감 - 현지조사 자료 - 문헌자료
평 가 대 상 지 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5km)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준설 및 매립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 매립공사를 위한 재료원 확보계획 - 연약지반 발생
예 측·분 석 및 평 가 기 법	- 현지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지반현황 파악 및 처리대책 수립 - 매립 시 필요한 재료원의 확보계획 수립
관 련 자 료	- 지질조사 보고서 - 지형도(현황측량도면)/지질도
평 가 대 상 지 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3) 수환경의 보전

구 분	내 용	
	수 질	해양 환경
평 가 사 유	공사 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발생 및 운영 시 오·폐수 발생	준설 및 매립공사로 인한 해수유동, 오염물질 확산 등 해양환경의 변화
예 측·분 석 및 평 가 기 법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부유물질 가중치의 예측·분석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량에 대한 처리대책 수립 - 운영 시 오·폐수발생으로 인한 가중치의 예측·분석 및 처리대책 수립	- 현지조사 및 기존문헌 자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해양환경변화 예측 - 부유사확산실험을 통한 부유물질 농도별 확산범위 예측·분석
관 련 자 료	- 현황실측자료 -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문헌자료	-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 수치모형실험(Cythere ES1) - 문헌자료
평 가 대 상 지 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5km)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대기환경기준의 부합성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토사운반 및 장비가동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 시 연료사용 및 유발교통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 측·분 석 및 평 가 기 법	- 공사장비의 가동과 토사의 이동에 따른 대기질 영향예측 분석(예측모델 : AERMOD) - 운영 시 자동차 및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질 영향예측 분석(예측모델 : AERMOD)
관 련 자 료	- 환경통계연감(대기환경연보 및 월보) - 대기질 모델링 - 문헌자료 - 현지조사 및 현황실측 자료
평 가 대 상 지 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1km)

2) 소음·진동환경기준의 부합성(소음·진동)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공사 시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영향 - 운영 시 유발교통량에 따른 소음영향
예 측·분 석 및 평 가 기 법	- 공사 시 및 운영 시 소음·진동이 예상되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서의 소음도 예측 - 공사 시 - 점음원 거리감쇠 공식 - 운영 시 주변가로의 교통량에 의한 소음도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운영 시 - 도로 교통소음 예측공식
관 련 자 료	- 건설기계류 소음 특성(국립환경연구원) - 건설공사장의 소음관리 요령(환경부) -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 - 환경진동의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국립환경연구원) - 소음·진동 업무 편람(소음진동학회)
평 가 대 상 지 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500m)

3)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친환경적 자원순환)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공사 시 공사인부 및 장비투입에 따른 폐기물 발생 - 운영 시 계획인구 및 산업시설에 의한 폐기물 발생
예 측·분 석 및 평 가 기 법	- 공사 시 지장물의 철거 및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 운영 시 계획인구 및 산업시설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
관 련 자 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 인천광역시 중구 통계연보 - 폐기물 관리법, 재활용촉진법 또는 관련 재활용 지침 - 각종 폐기물 원단위 자료
평 가 대 상 지 역	계획지구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토지이용)

구 분	내 용
평 가 사 유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의 변화 -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으로 토지이용 효율 증대
예 측·분 석 및 평 가 기 법	- 사업시행에 따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파악 -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와 이를 고려한 계획지구의 적정성 검토
관 련 자 료	- 인천광역시 중구 통계연보 및 도시기본계획 - 지적도 및 토지이용현황도
평 가 대 상 지 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3.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본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시행방안 등의 검토 등을 위하여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 및 “수단·방법”을 선정하여, 각 대안별 검토를 실시함

<표 3 - 1>

대안 선정 내용

대안종류	선 정 내 용
계획비교	• 행정 계획의 수립 상황(Action, 대안1)과 미수립상황(No Action, 대안2)을 비교하여 검토함
수단·방법	•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안1(계획안), 대안2(비교안)를 비교하여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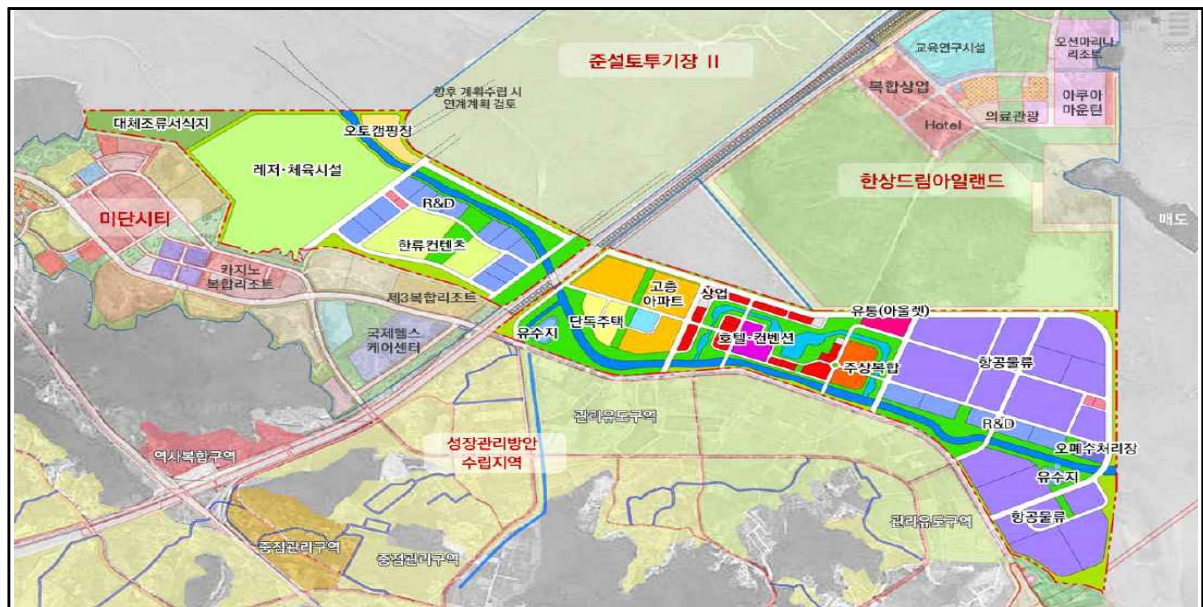
가. 대안별 검토

(1) 계획 비교

- 계획의 수립 상황(Action, 대안1)과 미수립상황(No Action, 대안2)을 비교하는 것으로 대안설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대안으로 선정하여 검토

(가) 대안1 (Action)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관광레저기능의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화·다변화 되는 외래 관광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각종 관광레저 기반시설을 구축
- 관광레저 기능 중심의 자족적 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장잠재력 강화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가용지로 영종2지구 개발계획을 통해 2030년, 인구 50만의 메트로폴리스를 대비하고, 가용지에 대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가능
- 미단시티 및 한상드림아일랜드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영종지구 활성화 방안 강구 가능



[그림 3 - 1]

대안1 (Action)

(나) 대안2 (No Action)

- 계획지구 북측의 준설토 투기장 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적·점진적으로 매립화되고 있는 실정임
- 미단시티 기반시설 조성 완료 후 분양율 30%정도로 활성화 미비, 사업지구 북측 투기장 I 은 2020년 한상드림아일랜드가 준공예정이고 2030년에는 투기장 II 가 준공예정이나 고립된 섬지역이 되어 장래가 불투명함



[그림 3 - 2] 대안2 (No Action)

(다) 검토결과

- 대안검토 결과 체계적인 토지이용 및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안1(Action)의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3 - 2> “계획 비교” 대안별 검토 결과

구 분	대안1 : 계획수립 (Action)	대안2 : 계획미수립 (No Action)
장 점	• 계획적·체계적인 개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 •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영종지구의 자족 기능 강화	• 조류서식지로서의 현 상태 유지
단 점	• 주변 개발사업과 유사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할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어 영종2지구 만의 특화된 토지이용계획 필요	• 북측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인한 점진적인 매립으로 갯벌의 현 상태유지가 어려우며 기 개발된 지역들로 인해 지속적인 인위적 간섭 발생 • 체계적인 토지이용 필요
선 정	○	

(2) 수단·방법

- 개발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안 검토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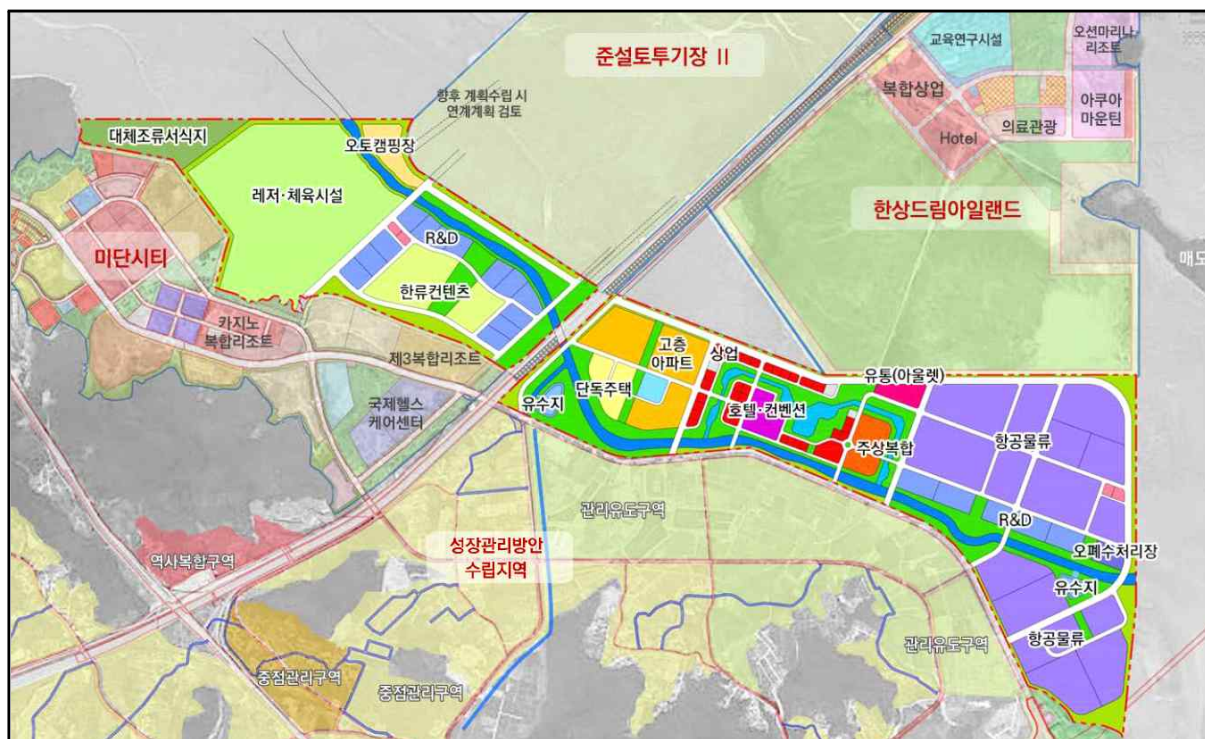
(가) 대안1 (계획안)

- 해수유통을 위하여 서측지구 수로에 기존 갯골 선형을 부분반영
- 수상활동을 위한 인공수로를 축소하고 해수유통을 위한 수로만 조성
- 서측지구에는 여가·레저·관광시설 용지, 동측지구에는 오·폐수처리장 및 산업·물류·R&D용지를 집적화 하여 주거단지와 분리
- 이미 조성한 미단시티 내 가처분용지 외 기반시설 용지 등 실제 개설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간 연계도로 설정

<표 3 - 3>

대안2 토지이용계획

구 분	토지이용계획표	
	면적(㎡)	비율(%)
합 계	3,894,366	100.0
주 거 용 지	237,939	6.1
상 업 용 지	86,297	2.2
호텔·컨벤션	31,748	0.8
산업·물류·R&D용지	1,054,311	27.1
공원·녹지용지	829,186	21.32
하천·수로용지	250,746	6.4
대체조류서식지	119,530	3.1
기타용지	724,383	18.6
도 로	560,226	14.4



(나) 대안2 (비교안)

- 상위계획에 의한 개발계획 (미단시티, 영종하늘도시 및 준설토 투기장 등)과 연계한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추구
- 대규모 골프장과 수상레저타운 등을 통한 관광기능 강화
-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을 통한 녹지축 구성 강화

<표 3 - 4>

대안1 토지이용계획

구 분	토지이용계획표	
	면적(㎡)	비율(%)
합 계	3,894,366	100.0
주 거 용 지	296,487	7.6
상 업 용 지	336,462	8.6
산 업 용 지	671,584	17.2
공원·녹지용지	787,191	20.2
하천·수로용지	378,846	9.7
기 타 용 지	700,135	18.0
도 로	723,662	18.6



(다) 검토결과

- 대안검토 결과 체계적인 토지 이용 및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대안1(계획안)의 추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3 - 5>

“수단·방법” 대안별 검토 결과

구 분	대안1 : 계획안	대안2 : 비교안
검토결과	• 수로연장 감소로 수로 개설·운용비용 절감	• 인공수로 연장시 수로 개설·운용비용 증가
	• 용도·기능간 집적배치로 시너지 및 집객효과 제고	• 용도·기능간 분산배치로 집객효과 감소
	• 주거단지 정주환경 개선	• 주거단지 정주환경 개선 필요
	• 생태적으로 활용가능한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체서식지 환경 개선	•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을 통한 녹지축 강화
	• 실제 개설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간 연계도로 설정⇒연계성·실현성 제고	• 도로계획의 연계성·실현성 부족
선 정	○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가. 의견 수렴 계획

- 본 전략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중앙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이며, 대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람을 시행할 계획임
- 한편,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평가서 초안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기관(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구청) 등에 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 한편,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승인기관(산업자원통상부) 및 협의기관(환경부) 등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나. 항목 결정내용 공개

- 본 전략 환경영향평가(평가준비서)를 통해 결정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20일 이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14일간 게시하고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초안에 반영할 계획임

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심의기간 : 2017년 08월 16일 ~ 2017년 09월 15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 평가 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기타의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구 분	소 속 및 직 책	성 명	비 고
위원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장	김승래	
위 원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주무관	황현민	
위 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사무관	노원복	
위 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주무관	최미영	
위 원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우	
위 원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지원처 과장	김인규	
위 원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조성과 환경지도팀장	배연호	
위 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하은숙	
위 원	지역주민 대표	장지선	
위 원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위 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황진환	
위 원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여운호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1) 총괄의견

구 분	심의결과
김승래 위원장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결정할 것
황현민 위원	- 동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으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 및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의 서식 현황, 이동경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입지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
노원복 위원	준비서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었으며, 공유수면 매립 등 공사 추진 시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항목별 예측을 실시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최미영 위원	영종지역은 주변 다른 매립사업등 개발계획이 병행되고 있어 현재 실시 및 장래계획을 포함하여 전체 자연생태계 환경용량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야 할 것임
김성우 위원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는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대체적으로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물새 서식 관련 영향저감방안, 갯골(하천) 및 수로시설의 유량·수질 유지방안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인규 위원	-
배연호 위원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등에 근거하여 동 계획의 입지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신설되는 주변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인구, 교통량 증가 등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오수발생량 증가 등을 산정하는 등 대상지역의 종합적인 오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개설시 하수관공사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 인근 수하암은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의 서식지로 본 공사로 인한 영향 파악 및 대체서식지 조성 등 저어새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구 분	심의결과
하은숙 위원	• 동 사업계획은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면적을 추가 지정(면적: 878,520㎡)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현황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의 필요성·타당성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적 누적영향 등을 면밀히 예측·평가한 후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동 계획의 상위계획(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등) 부합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장지선 위원	• 하천을 넓게 만들어 퇴적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항상 물이 있어 배가 다닐 수 있어야 함
조강희 위원	• 인천은 송도 등 3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으로 인해 천혜의 갯벌이 매립되어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훼손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본 사업부지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칠면초 군락 등 염생식물 군락지가 모두 사라졌고,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 및 취식지가 파괴되어 심각한 생태계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 •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 사업부지의 개발계획은 그나마 남아있는 자연적인 갯벌을 없애고, 준설토 투기장 조성 후 개발되는 섬과 영종도 사이의 갯벌과 바다를 포기하는 계획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임 • 게다가 기왕의 준설토 투기장도 개발계획수립의 변경되고 늦어지고 있는 시점에 연이어 갯벌매립을 통한 토지확보와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본 개발부지는 인근 준설토 투기장 조성 환경영향평가 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의 대체서식지로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곳 개발계획은 기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부정하고 황폐화시키는 결과로 행정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문제임 • 따라서 본 개발 부지내외의 4계절 갯벌 생태계와 조류를 정밀조사하고 대체 서식지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송도신항 배후부지의 경우도 매립도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갯벌매립과 호안축조 건설에 투입되는 토석 및 사석의 구체적인 반입 방안을 제시하고, 신규 채취장에 대한 그 위치와 채취 후 환경복원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본 공사로 인한 조류흐름 차단 및 해양환경변화에 대해 계절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특히 주변 어민들의 어업권 보상에 대한 규모를 산정하고, 주변 송도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가 지정되어 있음에 각각의 지정 주체인 인천시와 스위스 람사르 사무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 본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며, 주변 어촌계 및 시민들의 의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가 필요함

구 분	심의결과
황진환 위원	• 본 사업에서는 대상지역의 설정이 너무 협소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추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즉, 계획지역이 개발됨으로써 상당히 넓은 지역의 지형변화가 유발되고 이로 인한 생태계/어업활동의 영향이 예상됨 • 주민의견 수렴계획 부분에서는 대상 지역의 주민들로 제한되어 이 지역의 어업에 영향을 줘서 발생할 수 있는 어민의 의견수렴 계획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최종적으로는 영향평가 대상지역을 확장하여 지형/생태계 영향을 좀 더 평가해야 할 것이며,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적극적 계획이 필요할 것임
여운호 위원	• 전반적으로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 다만 일부 용어에 대한 표현만 수정하면 더욱 양호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심의결과
김승래 위원장	• 해당 없음
황현민 위원	•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평가항목은 현지 조사 및 영향 예측지역을 당초계획(준비서 19p, 1km) 보다 확대 설정
노원복 위원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최미영 위원	• 환경영향평가법에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 에 의한 전략영향평가 대상지역 포함
김성우 위원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이 사업지구인 인천 중구 중산동 일원 및 주변지역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함
김인규 위원	• 의견 없음
배연호 위원	• 준설토 투기장에서의 매립으로 예단포선착장의 뿔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자연환경 및 해양생태계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보전 항목 및 수환경 보전 항목에 대한 평가대상지역을 확대하여야 함
하은숙 위원	• 대상지역의 설정은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 훼손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동 사업구역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육·해상 생물상 조사결과에 따라 법정보호종의 서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존지역의 설정 등 대상지역의 경계를 재설정하여야 함

구 분	심의결과
장지선 위원	-
조강희 위원	-
황진환 위원	• 지형 및 생태축 보전과 관련해서 공간적 범위를 계획지구 및 주변지구 1km로 하였으나, 본 사업추진 시 운명도, 세어도, 동검도 일대까지 유사 이송의 변화로 인하여 갯골 등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서식지 변화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공간적 범위 역시 확장되어야할 것임 • 이에 생물다양성과 지형변화 부분은 동검도 지역까지 확장할 것을 권장하고 통수의 변화로 인한 환경변화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다물도까지는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야할 것임
여운호 위원	• 적절

(나) 토지이용구상안

구 분	심의결과
김승래 위원장	• 해당 없음
황현민 위원	• 사업지구 및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를 면밀히 조사하고 사업지구 내 조류서식지 조성계획(위치, 면적 등)을 중점 검토 • 계획지구 서측 및 동측 갯벌(평가준비서 55p)의 생태적 가치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중점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 등 수립
노원복 위원	• 사업지구 주변 미단시티, 준설토투기장, 한상드림아일랜드, 하늘도시 등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차별성 및 갯벌 매립에 따른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1,2 단계로 토지이용 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최미영 위원	• 토지이용구상안은 대체서식지등 환경영향보전 대책안이 실현 가능한 이 용되도록 구성
김성우 위원	• 토지이용이 향후 R&D, 항공물류 등의 산업시설용지, 유통, 호텔·컨벤션, 한류콘텐츠제작소, 스포츠파크 등의 특화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상업 시설용지 등으로 상당부분 불투수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안지역의 자연적인 물순환을 저해하게 되리라 예상되므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방안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김인규 위원	• 의견 없음
배연호 위원	• 수로계획 수립시 충분한 수로 폭을 확보하여, 동강천 수계 바다 유출 기능을 유지, 장마시 동강천이 범람치 않도록 하여야 함
하은숙 위원	•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현황과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본 사업 개발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구 분	심의결과
장지선 위원	하천이 너무 좁고 넓게 만들어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도 준설토 1,2 투기장 때문에 예단포항이 토사가 많은 쌓이는 실정이며 동강천에 엄청난 물이 비가 오면 내려와 대비하여야 함
조강희 위원	-
황진환 위원	- 계획 지구내의 갯골은 유출의 목적이 아닌 해수 통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천추출을 전제한 개발은 추후 주변 환경에 환경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재의 형태로 유지될 경우 충분한 통수가 불가능하여 추후 악취 등으로 인한 다른 형태의 추가적 사업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여운호 위원	적절

(다) 대안

구 분	심의결과
김승래 위원장	해당 없음
황현민 위원	-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대안 설정 - 설정된 대안별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안전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 선정
노원복 위원	체계적인 토지 이용 및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2개의 토지이용계획 안을 수립하여 최적의 안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최미영 위원	대안설정부분중 Action의 경우 환경보전대책은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한 대체 가능한 보전대책이 되어야 하며 그 이유와 실효성 기술
김성우 위원	갯벌기능 상실 및 주변개발에 따른 조류서식지로서의 현 상태 유지가 어렵다면 계획수립(Action) 대안1이 바람직하나, 갯벌복원이 또 다른 방향의 적극적인 대안3이 될 수 있음
김인규 위원	사업부지 인근에서 추진 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주택공급물량 등을 고려하여 “수요·공급”에 대한 대안수립이 필요함
배연호 위원	의견 없음
하은숙 위원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보전에 대한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No Action 대안)을 포함한 3개 이상 설정을 비교·제시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장지선 위원	-
조강희 위원	-

구 분	심의결과
황진환 위원	• 대안 2 (no action)의 향후 변화를 자연적 점진적으로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으나, 대안 1 (Action)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지역의 매립이 진행되거나 혹은 갯벌의 일부 지역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 • 즉 대안1이 대안 2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볼 수 없음. 지형/생태 부분을 고려한 대안 1의 해결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권장함 • 또한 대안 3의 경우는 생태/지형/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대안 1과 사실상 같은 계획으로 대안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 대상지역의 변경이나, 혹은 축소를 고려한 대안의 제시가 더욱 필요할 것임
여운호 위원	• 적절

(라)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구 분	심의결과
김승래 위원장	• 해당 없음
황현민 위원	• 사업지구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시 누적 평가를 실시
노원복 위원	• 평가항목, 범위, 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며, 철새 등 조류 서식공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최미영 위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정한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 항목 규정에 의거 작성 •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중 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보전(육상 및 해양 동·식물상)중 및 수환경의 보전(수질, 해양환경) 예측범위 공간적범위는 주변 갯벌 생태계 전체(영종지구)를 공간적범위에 포함할 것 • 지역 개황중 영향권내 주요동식물 보호종 서식지 및 서식 현황 추가 작성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다른 매립 등 개발계획을 포함(현재 실시 및 장래)하여 생태계 전체 환경용량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
김성우 위원	• 평가 항목 및 범위의 설정, 항목별 조사/예측/평가방법 등은 대체적으로 적절함.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에 토지이용 항목에서 저영향개발(LID)기법의 적용 기본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김인규 위원	• 의견 없음
배연호 위원	• 의견 없음

구 분	심의결과
하은숙 위원	• 육·해상 동·식물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여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 조사 횟수, 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에서 검은머리물떼새, 큰기러기, 황조롱이, 알락꼬리마도요, 대모잠자리 등의 법정보호종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바, 동·식물상의 서식시기를 고려하여 중점 조사 실시 • 대기질 및 소음·진동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 및 주변 정온시설, 개발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PM-2.5 추가, 사업부지 주변 정온시설 및 오염유발시설 현황(이격거리 등)을 누락되지 않게 정확히 파악하고 영향예측 결과를 면밀히 분석·제시 • 사업지구 내, 주변지역 주요 조망점(도로 등)에서의 경관영향분석(경관시뮬레이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주변 환경(특히, 해안)과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계획(건물높이 및 밀도 관리, 배치계획, 통경축 확보 등)을 수립·제시 •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 오수 처리수 등으로 인한 하류 수계(인근 해양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후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처리 등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계획 시행에 따른 급수계획 및 오수처리계획(발생량, 처리기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양의 자연 발생 불소 현황치가 높은 지역으로 사업부지 내 불소 현황을 조사하여 토양오염 개연성 확인 후 적정 처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시 조사지점 선정은 가급적 현황 조사지점,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예측지점과 연계되도록 선정하여야 함
장지선 위원	-
조강희 위원	-
황진환 위원	•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항목에 대한 제외 사유를 제시하여야할 필요가 있음 • 선정된 중점 평가 항목의 방법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음
여운호 위원	• 69쪽 <표 6.1-4>에서 <자원 에너지순환의 효율성>의 선정사유 중 <산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변경 해주기 바랍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용어에 맞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구 분	심의결과
김승래 위원장	• 관련 법률에 따라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
황현민 위원	-
노원복 위원	• 관련 법률에 따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최미영 위원	• 주민동의 절차를 위한 환경영평평가법 제25조에 의거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
김성우 위원	• 법정절차에 따른 통상적인 의견수렴 계획으로 판단됨
김인규 위원	-
배연호 위원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획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하은숙 위원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장지선 위원	-
조강희 위원	-
황진환 위원	• 주민의견 수렴은 대상이 제시되어야 함. 특히 매립지역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즉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민원제기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여운호 위원	• 적절

(바) 기타의견

구 분	심의결과
김승래 위원장	-
황현민 위원	• 동 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분석
노원복 위원	•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압력 및 공유수면의 자연적 매립 진행 등으로 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동 사업 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최미영 위원	-
김성우 위원	• 갯벌기능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확보로 계획의 적정성 제고 필요
김인규 위원	• 수질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 -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기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유입할 경우 처리가능여부’ 또는 ‘건설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유입할 경우는 입주시기와 하수처리장 가동시기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어업권(한정 제2호 등 18개소)에 영향이 없도록 폐수처리계획 등 해양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배연호 위원	• 의견 없음
하은숙 위원	• 계획 추진의 목적, 배경, 추진경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장지선 위원	-
조강희 위원	-
황진환 위원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여운호 위원	• 적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총괄 의견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결정할 것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해당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해당없음 3. 대안 ○ 해당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해당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 법률에 따라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2017. 8. 30. 심의위원 김승래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면심의 의견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수립) □ 총괄 의견 ○ 동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 기본계획으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 및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의 서식 현황, 이동경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입지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평가항목은 현지 조사 및 영향 예측지역을 당초계획(준비서 19p, 1km) 보다 확대 설정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지구 및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를 면밀히 조사하고 사업지구내 조류 서식지 조성계획(위치, 면적 등)을 중점 검토 ○ 계획지구 서측 및 동측 갯벌(평가준비서 55p)의 생태적 가치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중점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 등 수립 3. 대안 ○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대안 설정 - 설정된 대안별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안전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 선정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지구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시 누적 평가를 실시 5. 기타 ○ 동 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분석 2017. 9. 15. 심의위원 황현민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김승래 위원장	황현민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총괄 의견 ○ 준비서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었으며, 공유수면 매립 등 공사 추진 시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항목별 예측을 실시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지구 주변 미단시티, 준설토투기장, 한상드림아일랜드, 하늘도시 등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차별성 및 갯벌 매립에 따른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1,2 단계로 토지이용 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3. 대안 ○ 체계적인 토지 이용 및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2개의 토지이용 계획 안을 수립하여 최적의 안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범위,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며, 철새 등 조류 서식공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 법률에 따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압력 및 공유수면의 자연적 매립 진행 등으로 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동 사업 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7. 8. 23. 심의위원 노원복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총괄 의견 ○ 영종지역은 주변 다른 매립사업등 개발계획이 병행되고 있어 현재 실시 및 장래계획을 포함하여 전체 자연생태계 환경용량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야 할 것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에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 에 의한 전략영향평가 대상지역 포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구상안은 대체서식지등 환경영향보전 대책안이 실현 가능한 이용되도록 구성 3. 대안 ○ 대안설정부분중 Action의 경우 환경보전대책은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한 대체 가능한 보전대책이 되어야 하며 그 이유와 실효성 기술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정한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 규정에 의거 작성 ○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중 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보전(육상 및 해양 동식물상)중 및 수환경의 보전(수질, 해양환경) 예측범위 공간적범위는 주변 갯벌 생태계 전체(영종지구)를 공간적범위에 포함할 것 ○ 지역 개황중 영향권내 주요동식물 보호종 서식지 및 서식 현황 추가 작성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다른 매립등 개발계획을 포함(현재실시 및 장래)하여 생태계 전체 환경용량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동의 절차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2017. 8. 29. 심의위원 최미영 (인)
노원복 위원	최미영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총괄 의견 ○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는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대체적으로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물세 서식 관련 영향저감방안, 갯골(하천) 및 수로시설의 유량·수질 유지방안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이 사업지구인 인천 중구 중산동 일원 및 주변지역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절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이 향후 R&D, 항공물류 등의 산업시설용지, 유통, 호텔·컨벤션, 한류콘텐츠제작소, 스포츠파크 등의 특화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등으로 상당부분 불투수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안지역의 자연적인 물순환을 저해하게 되리라 예상되므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방안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대안 : 갯벌기능 상실 및 주변개발에 따른 조류서식지로서의 현 상태 유지가 어렵다면 계획수립(Action) 대안1이 바람직하나, 갯벌복원이 또 다른 방향의 적극적인 대안3이 될 수 있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 및 범위의 설정, 항목별 조사/예측/평가방법 등은 대체적으로 적절함.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에 토지이용 항목에서 저영향개발(LID)기법의 적용 기본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법정절차에 따른 통상적인 의견수렴 계획으로 판단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갯벌기능 상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확보로 계획의 적정성 제고 필요 2017. 8. . 심의위원 김 성 우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수립)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토지이용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사업부지 인근에서 추진 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주택공급물량 등을 고려하여 “수요·공급”에 대한 대안수립이 필요함.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5. 기타의견 ○ 수질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 - 사업부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기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유입할 경우 처리 가능여부’ 또는 ‘건설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유입할 경우는 입주시기와 하수처리장 가동시기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어업권(환경 제2조 등 18개소)에 영향이 없도록 폐수처리계획 등 해양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017. 8. 30. 심의위원 김 인 규 (인)
김성우 위원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총괄 의견 ○ 동 사업계획은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 기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면적을 추가 지정(면적: 878,520㎡)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현황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의 필요성·타당성을 제시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적 누적영향 등을 면밀히 예측·평가한 후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동 계획의 상위계획(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등) 부합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설정은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 훼손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동 사업구역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육·해상 생물상 조사결과에 따라 법정보호종의 서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존지역의 설정 등 대상지역의 경계를 재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현황과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본 사업 개발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3. 대안 ○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보전에 대한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No Action 대안)을 포함한 3개 이상 설정을 비교·제시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육·해상 동·식물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여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 조사 횟수, 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에서 검은머리물떼새, 큰기러기, 황조롱이, 알락꼬리마도요, 대모잠자리 등의 법정보호종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마, 동 동물상의 서식시기를 고려하여 중점 조사 실시	김인규 위원 ○ 대기질 및 소음·진동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 및 주변 정온시설, 개발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PM2.5 추가, 사업부지 주변 정온시설 및 오염유발시설 현황(이적거리 등)을 누락되지 않게 정확히 파악하고 영향예측 결과를 면밀히 분석·제시 ○ 사업지구 내, 주변지역 주요 조망점(도로 등)에서의 경관영향분석(경관사물 레이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주변 환경(특히, 해안)과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경관 영향을 최소화 하는 자감계획(건물높이 및 별도 관리, 배치계획, 통풍속 확보 등)을 수립·제시 ○ 사업시행 시 발생되는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 우수 처리수 등으로 인한 하류 수계(인근 해양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후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처리 등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계획 시행에 따른 급수계획 및 우수처리계획(발생량, 처리기술·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양의 자연 발생 불소 현황치가 높은 지역으로 사업부지 내 불소 현황을 조사하여 토양오염 개연성 확인 후 적정 처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시 조사지점 선정은 가급적 현황조사지점,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예측지점과 연계되도록 선정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진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계획 추진의 목적, 배경, 추진경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017. 8. . 심의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하 은 속 (인)
하은속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수립) □ 총괄 의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등에 근거하여 동 계획의 입지 및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신설되는 주변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인구, 교통량 증가 등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오수발생량 증가 등을 산정하는 등 대상지역의 종합적인 오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개설시 하수관공사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지구 인근 수하암은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의 서식지로 본 공사로 인한 영향 파악 및 대체서식지 조성 등 저어새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준설토투기장에서 매립으로 예산포선착장의 별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불 대 자연환경 및 해양생태계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보전 항목 및 수환경보전 항목에 대한 평가대상지역을 확대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수로계획 수립시 충분한 수로 폭을 확보하여, 동강전 수계 바다 유출 기능을 유지, 장마시 동강전이 범람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이 동담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획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17. 심의위원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총괄 의견 ○ <i>최초로 남해반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항상 목이 있어 배가 아파서 왔어야 할</i>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2. 토지이용 구상안 ○ <i>하천이 더욱 좁고 넓게 만들어 배가 아파서 온도를 하여야 하며 현안으로 1.2투기장 매립에 여과장치가 설치되어 있어</i> 3. 대안 ○ <i>대안 1번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대안 2번과 3번이 아예 없어야 함</i>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2017. 심의위원 장지선 (인)
배연호 위원	장지선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영종2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 심 의 의 건 ○ 인천은 송도 등 3개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인해 천혜의 갯벌이 매립되어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훼손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본 사업부지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준설토투기장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칠면조 군락 등 멸종생물을 군락지가 모두 사라졌고,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 및 위식지가 파괴되어 심각한 생태계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 ○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 사업부지의 개발계획은 그나마 남아 있는 자연적인 갯벌을 없애고, 준설토투기장 조성후 개발되는 심과 염종도 사이의 갯벌과 바다를 포기하는 계획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임 ○ 게다가 기왕의 준설토 투기장도 개발계획수립의 변경되고 늦어지고 있는 시점에 연이어 갯벌매립을 통한 토지확보와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사회책임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본 개발부지는 인근 준설토 투기장 조성 환경영향평가서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의 대체서식지로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곳 개발계획은 기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부정하고 철회화시키는 결과로 행정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문제임. ○ 따라서 본 개발 부지내의 4제철 갯벌 생태계와 조류를 정밀조사하고 대체서식지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송도신항 배후부지의 경우도 매립도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갯벌매립과 호안축조 건설에 투입되는 토석 및 사석의 구체적인 반입 방안을 제시하고, 신규 채취장에 대한 그 위치와 채취후 환경복원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본 공사로 인한 조류보호 차단 및 해양환경변화에 대해 4제철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특히 주변 어민들의 어업권 보상에 대한 규모를 산정하고, 주변 송도 습지보호지역과 탐사트 습지가 지정되어 있음에 각각의 지정 주체인 인천시와 소위 탐사트 사무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 본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며, 주변 어촌계 및 시민들의 의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가 필요함 2017. 8. 심의위원 조강희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총괄 의견 ○ 전반적으로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 다만 일부 용어에 대한 표현만 수정하면 더욱 양호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절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절 3. 대안 ○ 적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69쪽 <표 6.1-4>에서 <자원 에너지순환의 효율성>의 선정사유 중 <산업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변경 해주기 바랍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용어에 맞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적절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적절 2017. 8. 30. 심의위원 여운호 (인)
조강희 위원	여운호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총괄 의견 ○ 본 사업에서는 대상지역의 설정이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추후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음. 즉, 계획지역이 개발 필요로써 상당히 넓은 지역의 지형변화가 유발되고 이로 인한 생태계/어업활동의 영향이 예상됨. ○ 주민 의견 수렴계획 부분에서는 대상 지역의 주민들로 제한되어 이 지역의 어업에 영향을 줘서 발생할 수 있는 어민의 의견 수렴 계획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최종적으로는 영향평가 대상지역을 확장하여 지형/생태계 영향을 좀 더 평가해야 할 것이며,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적극적 계획이 필요 할 것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지형 및 생태축 보전과 관련해서 공간적 범위를 계획지구 및 주변지구 1km로 하였으나, 본 사업추진시 운명도, 새어도, 동검도 일대 까지 유사이송의 변화로 인하여 갯골 등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서식지 변화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공간적 범위 역시 확장되어야 할 것임. ○ 이에 생물다양성과 지형변화 부분은 동검도 지역까지 확장할 것을 권장하고 통수의 변화로 인한 환경변화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다물도까지는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임. 2. 토지이용 구상안 ○ 계획 지구내의 갯골은 유출의 목적이 아닌 해수 통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천유출을 전제한 개발은 추후 주변환경에 환경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재의 형태로 유지될 경우 충분한 통수가 불가능하여 추후 악취등으로 인한 다른 형태의 추가적 사업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임.	3. 대안 ○ 대안 2 (no action)의 향후 변화를 자연적 점진적으로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으나, 대안 1(Action)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지역의 매립이 진행되거나 혹은 갯벌의 일부 지역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 ○ 즉 대안 1이 대안 2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볼 수 없음. 지형/생태 부분을 고려한 대안 1의 해결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권장함. ○ 또한 대안 3의 경우는 생태/지형/공학적 측면에서 볼 때 대안 1과 사실상 같은 계획으로 대안이라고 판단 할 수 없음. 대상지역의 변경이나, 혹은 축소를 고려한 대안의 제시가 더욱 필요할 것임.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항목에 대한 제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선정된 중점 평가 항목의 방법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의견 수렴은 대상이 제시되어야 함. 특히 매립 지역 주변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즉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민원제기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17. 08. 30. 심의위원 황진환 
황진환 위원	